

# 韓服에 사용되는 布帛尺에 관한 研究

한 은 회 · 유 송 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의상학과 박사과정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 A Study on the Measuring Rule for Korean Traditional Costume

Eun-Hee Han · Song-Ok Ryu\*

Dept. of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Prof.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2000. 12. 18 투고)

### ABSTRACT

The measuring rule is to estimate a size of a physical solid and its standard was each part of body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Korean traditional measuring rule was "Kyul Boo Sok Pa Bob"(結負束把法). It bases on wreth of farm land and means a handful and a bundle. It was the real Korean traditional measuring rule though it was a influence on Chinese rule. And in Koguryo it had an effect on Japanese's. In Chosun dynasty the King Sejong imprived the measuring rule and regylations in such a way to meet the realistic needs of civil lives. He put in good order by a proportions of the musical scale. It was one of the correct ways to preserve the measuring rule and based on "Kyul Boo Sok Pa Bob" too. So in that time the measuring rule for Korean traditional costume's length was 46.703cm. In king Soonjo it's length was 49.254cm and in 1926 it changed 50cm by the metric system.

In 1990s the standard length has a difference in regions, 30cm, 45cm, 50cm, 54.5cm, 55cm and 60cm. As a result of the actual object investigation by regional measuring rule for Korean traditional costume it can reduce an accidental error when use the standard measuring rule, 50cm.

Key Words : The Rulers for Korean Traditional Costume(포백척), The Measuring rule of Chosun Dynasty, Korean Traditional Measuring Rule

### I. 서 론

척(尺)은 인류가 생존하였을 때부터 생존에 필요한 물질의 크기나 분량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시적으로나마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고안해 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sup>1)</sup> 척의 근원은 인체 및 자연물에서 그 기준을 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척의 동질성면에서 볼 때 인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尺'이라는 한자도 본래 신체를 본뜬 것이며, 중국 최초의 척인 주척(周尺)도 지척(指尺)에서 시작된 척이다.<sup>2)</sup> 우리 나라에서도 고유한 척도단위의 명칭이 신체와 관련되어 불리고 있는데, '뺨', '길', '발'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척의 하나인 포백척(布帛尺)은 의복을 재단하거나 각종 포백(布帛)을 측량할 때 사용되는 자(尺)를 뜻하며 포백척의 사용은 상고시대 의복착용과 더불어 발생하여 지금에 이르며 각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이에 대한 기록과 유물이 적어 포백척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하여 짐작만 할 뿐 복식에 대한 기록과 유물의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포백척에 대한 연구로는 우선 박홍수가 “한중 도량형제도사”(1999)에서 한국과 중국의 포백척을 포함한 도량형제도 전반의 변천사를 집대성하여 각 시대별로 나누었고 이은경은 “조선왕조의 포백척에 관한 연구”(1980), “한국과 중국의 포백척에 관한 연구”(1990)에서는 포백척에 관하여 연구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척제(尺制)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尺制의 원류를 중국으로 보고 있고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척도에 오기가 있었음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포백척이 직물의 종류별로 존재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포백척은 기준척에 비례하여 정해졌고 이 비례는 일정한 비례율로 규정되었으며 포백은 조세수단이었으므로 포백척은 그 시대에 하나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 한국 전통복식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우리나라 고유의 척도와 고대부터 현재까지 다르게 사용된 포백척의 변천과정을 연구하며 상고시대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척이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 현재 한국 전통복식의 제작시 사용되는 50cm의 자, 즉 1자가 50cm가 된 근원을 밝히고 현재 사용되는 자의 실태조사를 하여 복식에 직접 적용하고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연구의 범위는 척제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고조선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포백척 제도에 영향을 미친 중국은 주에서 청대까지 포함하였고 포백척의 실태조사는 현재 한국 전통복식을 제작하는 각 지역의 대표적인 상점을 대상으

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기록과 현재 남아있는 척도의 유물을 근거로 포백척의 기원 및 우리나라와 중국의 포백척의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포백척을 알 수 있는 기준척들 즉 황중척(黃鍾尺), 주척(周尺), 영조척(營造尺),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미터법 사용 이후 현재 포백척의 단위를 밝히기 위하여 현재 한국복식을 제작하고 있는 상점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 연구하며 이를 기준으로 복식을 제작하여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 II. 포백척(布帛尺)의 정의 및 기원

### 1. 포백척의 정의

포백척을 보기에 앞서 도량형(度量衡)과 척도(尺度)를 정의해 보면 우선 도량형이란 한서(漢書)의 漢書律歷志(漢書律歷志)에서는 도(度)는 장단(長短)을 재는 것이고 양(量)은 다소(多小)를 재는 것 그리고 형(衡)은 균형(均衡)하는 것이라 이르며 척도(尺度)의 범위는 성곽, 전담 제도 등에서부터 복(服), 의상(衣裳), 포(布), 백(帛) 등의 일상용품의 장단을 포함한다.

따라서 포백척은 도량형 중 도(度)의 범위에 포함되며 척도 중 포백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백척에 대한 정의를 문헌으로 보면 척도하는 옷감의 종류와 사용되어지는 장소, 용도에 관계없이 모두 포백척이라 하며 포백척에는 침척(針尺), 포척(布尺), 재척(裁尺), 면주척(綿紬尺), 저포척(苧布尺) 등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하겠다.

### 2. 포백척의 기원

도량형은 인류가 생존에 필요하였던 물질의 크기나 분량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명하지 않으나 물량계량법으로서의 용적기준에 관한 것은 농경사회 생활에서 곡물계량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어 발전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sup>3)</sup> 여기에 물물교환을 위해서는 도량형의 동일성이 필요하였고

포백척도 같은 경로로 제정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도량형의 근원은 인체 및 자연물에서 그 기준을 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인체기준설과 자연물기준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인체기준설은 상고시대 사람들이 인체의 지장(指長), 수장(手長), 팔꿈치를 단위로 삼은 주장(肘長), 족장(足長) 및 신장(身長) 등을 척도의 단위로 삼아서 직접적인 척도의 비교체계를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설(說)로 사기(史記), 예기(禮記), 공양전(公羊傳) 등에 그 기록이 있다. 이것을 의상에 비추어보면 치수를 쥔 때 손가락, 팔, 어깨 등 몸의 일부분으로 어림잡는 경우이다.

자연물 기준설은 거서(拒黍), 잠사(蠶絲), 마미(馬尾)와 같은 자연물에서 척도의 기준이 생겼다는 설인데 이것은 영구불변하는 물리량이 아닌 농작물이므로 생산조건에 따라 알맹이 크기에 변화가 있을 뿐 아니라 중간 크기를 어떻게 정하는가, 또 넓이를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생기므로 이것은 동일한 길이를 얻기가 힘들다고 보아진다.

포백척 제도의 시대구분 기준은 시대마다 변화하였으므로 기준을 도량형의 개혁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도량형의 단위를 한 가지로 정비하는 작업이었으므로 포백척의 변천과정에서 시대구분의 기점은 이 도량형 개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중국의 포백척 제도

### (1) 주대(周代)

중국의 경우 척의 시원(始原)은 은주시대(殷周時代)지만 척이 실제로 전하는 것은 월선후대의 일이며 현재의 문헌들은 학자들이 유물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전해오는 가장 오래된 척으로 은대의 골제척과 상아제척이 있는데 상아제척은 길이 15.8cm, 폭 1.6cm, 두께 0.5cm로 겉에는 10촌을 새기고 각 촌마다 10분을 새겨 10진법을 표시하고 있다.

은(殷)은 북방의 퉁구스 종족이 주로 지배하였으며 이들은 장척(長尺)을 사용하였던 반면 주는 중원의 종족으로 이들은 작은 척도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나라에서는 인체를 기준으로 한 신도척(身度尺)이 사용되었고 주척은 남자의 수장

(手長)인 19.91cm를 1척으로 하였으며 부인의 수장은 주척의 팔촌(八寸)(15.92cm)이었다고 한다.<sup>4)</sup>

### (2) 북위(北魏)

위서(魏書) 태조(太祖) 도무제(道武帝) 천흥원년(天興元年)(398) 팔월기(八月記)에 의하면 위가 천흥원년(위 건국 후 13년)에 각종제도를 정돈(整頓)할 때 도량형제도도 통일 정돈하였다. 이때 통일된 도량형제도는 견포(絹布)제도였을 것이며 이는 전한 시대의 기록에서 알 수 있고 포폭은 2척2촌(2尺2寸)으로 길이 4장(丈)을 1필(匹)로 정하였다고 한다.<sup>5)</sup> 전한시대의 포백척을 양기척(量器尺)인 길이 23.2cm로 본다면 포폭=2척2촌=51.04cm / 1필=40척=928cm / 1필 넓이=2척2촌×40척=47.365cm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제도는 북위에서도 그대로 전수되어 40척을 1필, 60척을 1단으로 하고 견포의 광을 2척2촌으로 하고 있다.<sup>6)</sup> 그러나 견포를 계량하는 표준척이 전한(前漢) 시대에는 23.0-23.6cm가 되었는데 비하여 고조(高祖)의 연흥(延興) 때에는 길이가 28.05cm인 북위중척(北魏中尺)이 사용되었다. 이를 계산하여 보면 견포광(絹布廣)=2척2촌=61.72cm / 1포광(匹長)=40척=1122cm / 1필광(匹廣)=2척2촌×40척=69.252cm / 1단(端)=60척=16.83m 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증량된 견포량은 전한 시대에 비하여 1.45배에 해당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위 시대의 1필의 견포면적은 비례에 의해 6.925㎡이 되었고 견포폭은 61.72cm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조19년 이후에는 견포척은 북위후척이 되어 견포폭은 65.3cm, 1필의 길이는 11.87m가 되어 1필광은 7.745㎡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3) 수·당대(隋·唐代)

당에서는 도량형제도의 표준량을 통일시킨 후 천보(天寶) 9년(750)에는 각종 백물제도(百物制度)의 표준량도 규격화시켰다. 이때 당대척장(唐大尺長)이 29.7cm로 제정되어 이에 비례하면 견포의 폭은 1척 8촌, 길이는 40척을 1필로 제정하였다. 이를 수치화 시키면 포백폭(布帛幅)=1척8촌=53.4cm / 1필장=40척=1187cm / 1필광=53.4×1187=63.386㎡가 되어 폭은 북위 고조후 보다 약 8.3cm가 좁아졌으나, 1필의 길이는 65cm가 길어져서 결과적으로

는 포광(布廣)이 약 8.5% 감소하였다. 그러나 대력(大歷) 11년(776) 이후에는 당대척장이 더욱 신장하게 되었으므로 1필의 포백광도 이에 비례하여 연차로 늘어나 오히려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같이 전한에서부터 포백척은 전한척, 위척, 북위후척, 당대척으로 교체되게 되었고 1필광(匹廣)도 점진적으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 송·명·청대(宋·明·靑代)

송대에는 도량형기의 제작이 한층 더 정교해 졌는데 도량형제는 당제를 도용하고 관척(官尺)은 태부사(太府寺)가 장악하여 만들었으며 공포시행한 표준척의 주목적은 포백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송대의 포백척은 주척의 약 1척3촌5분으로서 31.0cm가 되며 이것은 율려신서(律呂新書)와 옥해(玉海)에 기록되어 있다. 심괄(沈括)의 몽계필담(夢溪筆談)에서는 포백척이 주척의 1척3촌7분1리에 해당하고 31.65cm가 된다. 따라서 송대의 포백척 길이는 31.0cm이었으나 송 말기에 이르면 포백척도 끊임없이 증강하여 32.9cm에 달하기도 하였다.

명대에는 은(銀)화폐가 널리 유통되고 화폐 지조(貨幣 地祖)도 나타났으며 엄격한 도량형제도에도 불구하고 관료, 지주, 상인은 나름대로 도량형 기구의 단위를 증대시켰다.

주재욱(朱載堉)의 율학신설(律學新說)에 그려진 척도도를 실측해 본 바에 의하면 양지척(量地尺)은 재의척(裁衣尺)의 9촌6분3으로, 영조척은 재의척의 9촌3분이 된다. 성화양기(成化量器)의 양지척의 길이 31.9625cm를 기준하면 재의척의 길이는 33.177cm이 된다.

청대에는 사용된 모든 척이 획일화되지 못하였으므로 각 지방에서 표준을 만들거나 관사에서 출납하였고 규정은 모두 중앙으로부터 나누어 내려졌다. 이 때 규정한 것은 도기(度量器)의 종류 중 직척(直尺) 한부분으로 율척(律尺)과 영조척이라 하였으며 재의척에 대해서는 전부터의 쓰임을 기준으로 하여 그 비례율을 정하였다. 따라서 영조척 1척은 재의척 9촌이고, 영조척 1척1촌1분1호(豪)는 재의척 1척이 되며 율척 1척은 재의척 7촌2분9리이고, 율척 1척3촌7분1리(厘)7호는 재의척 1척이 되었으나 발견된 유물들은 이보다 짧다. 이에 비해 함풍

(咸豐) 때 중·영통상조약(中·英通商條約)의 표준척으로 제정된 해관척(海關尺) 길이는 35.8cm로서 법정 재의척보다 긴 척도가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재의척은 35.8cm 또는 그보다 더 신장된 척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우리나라의 포백척 제도

### (1) 고조선시대~삼국시대

우리나라에서 삼국사기의 백제 동성왕(東城王) 22년(500)의 기록과 삼국유사의 선덕왕(善德王) 12년(643)의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도량형제도가 삼국시대 이전에 이미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시기는 불분명하다.

단군조선에서는 이미 먹, 짐, 단, 줌(1 단=10줌, 1짐=10단=100줌, 1먹=100짐=15463m<sup>2</sup>, 1말=10되) 법이 있었으며 기자조선에 와서 단군조선의 양지척(量地尺)이었던 장농부(將農夫) 손(手)의 10지척(指尺)을 기전척(箕田尺)으로 교체하였다.

기자조선(箕子朝鮮)의 도량형제도는 기전(箕田)을 통하여 그 크기를 알 수 있는데 이에의하면 기전은 길이가 35.51cm인 은척(殷尺)을 양지척(量地尺)으로 하여 방 6척4촌(方 6尺4寸) (1간(竿) 또는 1보(步))의 땅넓이를 기준넓이로 방 40간의 넓이를 1구(區)라 하면 4구를 1전(田), 16전 넓이를 하나의 기본 할지원형(割地原形)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쳐 세종28년까지 관용되고 있었던 도량형이며 기자가 건국초에 은의 도량형제도를 기준하여 새로운 통일된 도량형제도를 정립하여 실시한 제도로 보여진다. 그리고 결부속파법(結負束把法)이 기자 이전의 도량형제도로써 통일신라, 고려, 조선조의 세종대까지 양전법으로서 전해지게 되었다.

낙랑시대에는 한척(漢尺)(23.0cm)이 사용되었고 삼국시대에는 고려척(高麗尺)(35.06-35.63cm)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고려란 고구려를 말한다. 고려척은 양전척(量田尺)이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아직 확인되지 못하였고<sup>7)</sup> 고려척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척도를 대척(大尺)과 소척(小尺)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대척의 길이를 소척의 1.2배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sup>8)</sup> 이것은 당의 대·소척제도

(大·小尺制度)<sup>9)</sup>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화동(和銅) 6년(713)에는 화동격(和銅格)을 반포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대보울령 때의 1보(步)를 5척으로 하였던 것을 6척을 1보제(1步制)로 하고 1보의 실제 면적은 같고 대보령의 5척과 화동격의 6척은 그 길이가 같고 고려오척(高麗五尺)은 6척에 해당된다.<sup>10)</sup> 따라서 화동격의 대척은 당대척과 길이가 같다고 보며, 고구려척의 길이는 그것의 1.2배가 된다고 하였다.<sup>11)</sup> 또 본조도량권형고(本朝度量權衡考)의 본조도공(本朝度巧)에서는 "당대척(唐大尺)의 1척2촌 되는 고려척은..."라고 되어 있다.<sup>12)</sup> 따라서 고려척은 영(令)에서 제정된 곡척(曲尺) 0.98척의 척도이며 이것과 5대 6의 비를 가졌으므로 1척이 35.63cm가 된다.<sup>13)</sup>

고려척은 고대에 사용되던 가장 긴 장척(長尺)이었으며 요동과 산둥지방에서 근대까지도 널리 사용되었다. 그리고 백제는 건축물로 보아 고려척을 사용하였고 영조척에 기전척이 조금 신장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결부속파법(結負束把法)도 사용되었다. 신라때에도 결부속파법과 기자에 의한 도량형제도는 계속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신라때 관용척과 거기에 따른 제도는 양지척(量地尺)=장농부(將農夫)손(手)의 10지(指)=19.43cm / 양지척 1寸=1지폭(指幅) / 일반관용척=기전척=35.51cm / 1장=10척 / 1척=10촌 / 1촌=10분이었으며 이밖에도 포백척, 주척, 당대척 등도 같았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4)</sup>

### (2)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

신라가 삼국통일을 위하여 당과 교류를 하게 되자, 문무왕은 전교를 내려 척도와 도량형제도를 개혁하게 하였다.<sup>15)</sup> 그러나 양전법은 결부속파법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었고 전래의 도량형제도도 완전하게 개혁되지 않았지만 문무왕의 도량형 개혁은 전래의 기전척, 당대척, 주척 등을 표준으로 정한 개혁이라 할 수 있다. 고려는 신라 문무왕의 유척(遺則)에 의하여 개혁된 도량형제도가 고려 태조에 그대로 계승되어 그 제도가 계속되었다.

### (3) 조선건국후~세종

신라 문무왕21년의 도량형제도 개혁 때 당대척과 주척의 도입으로 기전척에 대한 표준사상이 흐려져 고려 문종은 양체제(量體制) 개혁 때 전래의 표준

원기(標準原器)의 장(長), 광(廣), 고(高)까지도 당대척으로 교체표기하였다. 따라서 후대인들은 그때의 길이표준으로 척도를 삼아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추측된다. 그러므로 표준이 되었던 관척장(官尺長)에도 길이차이가 생기게 되어 표준척의 길이가 문란하게 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조선조의 건국초기에 이르러서는 명나라 제도를 따르려는 사상까지 팽배해지자 도량형제도의 표준들도 재정돈하게 되었다.

이에 세종대왕은 1차로 세종3년에 형량(衡量) 제도를 먼저 고정 통일하였는데 이때 오레를 위한 조례기척을 만들어 오레란(五禮欄)에 척도로 표기를 해두었고<sup>16)</sup> 동시에 주척도 고정하였다 그러나 이때 포백척만은 동시에 교정하지 못하여 각 지방의 포백척 표준을 경시서(京市署)에서 모아 새로운 포백척을 만들어 그것을 각지방장관에게 환송하여 포백척까지도 통일하게 되었다. 이것은 경국대전을 통해 알 수 있으나 이 기록도 척도 사이의 길이의 비교치일 뿐 그 실질적인 길이를 밝히기에는 미흡하다.

세종은 도량형 제도를 통일할 때, 척도의 표준은 당시의 척도 중 가장 정확하였던 중국의 표준척도와 음악의 표준적인 황종척을 정확히 재현시켰는데 이것이 척도의 기본이 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황종척 기준에 의한 세종대의 제표준척의 길이<sup>17)</sup>

척종류	1척길이	
	단위(황종척)	단위(cm)
황종척	1.0000	34.72
주척	0.5993	20.81
영조척	0.8997	34.24
조례기척	0.8250	28.64
포백척(五禮)	1.2890	44.75
포백척(田制詳定所)	1.3460	46.73

이 비율에 의하면 포백척은 44.75cm이다. 그런데 세종 13년(1431)의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 준수책(遵守冊)에 기록된 포백척의 길이는 46.73cm로서 오레의 포백척 길이보다 1.98cm가 더 길고 세종 13년 4월에 고정된 구리로 만든 포백척 유물은 길이 46.73cm, 폭 3.6cm, 두께는 0.4cm이다. 이는 전제상

정소 준수책에 기록된 포백척의 길이와 일치한다.

세종대의 직포물(織布物)의 필법(匹法)제정에 대한 경위를 보면 신라 삼국사기에서의 문무왕 5년의 기록이다. 이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견포의 1필은 10심(尋)의 길이로서 정하고 있었으나 이 제도를 고쳐서 길이는 7보, 넓이는 2척으로 책정했으니, 당에서 보법(步法)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역시 인신척(人身尺)인 심법(尋法)이 사용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으며 이것은 고조선 때부터 관용되고 있었던 제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보폭을 76cm로 가정한다면 1(심)尋(성인 남자 1 발)의 길이는 대략 162cm 정도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옛날부터 행용되고 있었던 견포 1필의 길이는 1필=162cm×10발=16.2m이다. 이 길이를 7보로 제도개혁을 실시하였다면 그것은 1필=7보×6척=42척으로 하는 기준척인 포백척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 포백척이 만약 기준척이었다면 1필의 길이는 14.91m가 되었을 것이고 아니면 당에서 도입된 당대척이었다면 1필의 길이는 12.5m로 단축되므로 그렇다면 조세량이 감소되므로 이 두 가지 척도는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최소한 1필=16.2m=42×38.57cm와 같은 관계에서 길이가 38.57cm보다는 긴 포백척이 표준척이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기전척 이외에, 재의척(裁衣尺)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이 중 가장 표준으로 보여지는 척도가 포백척으로 제정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필법과 포백척은 고려를 거쳐 세종조로 전해졌는데 경국대전에 의하면<sup>18)</sup> 세종13년(1431)에 교정된 포백척을 기준하여 정포인 오승포(五升布)는 1필의 길이는 35척, 광(廣)은 7촌이 되게 제도화되고 있었다 한다. 따라서 1필=길이35척=35

×46.703=16,346cm/폭광(幅廣)=7촌=46.703\*0.7cm=32.69cm가 되어 1필의 척수는 42척에서 35척으로 변화하였으나 이는 포백척이 신장되었기 때문이고 실제 길이는 거의 같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길이의 1필 외에도 상납군포는 40척을, 중국에 진헌할 때에는 50척을 1필로 하였으며 일본과의 회례 때에는 47척을 1필로 하였고 이것이 훗날 35척으로 시정되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행용된 포백척은 우리나라 고유의 포백척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선시대 때에는 포백척을 1필=35척 1동=50필로 제정하고 있었다.

(4) 세종 이후~임진왜란

경국대전 공전에 나와있는 도지제(度之制)는 십리위분(十釐爲分), 십분위촌(十分爲寸), 십촌위척(十寸爲尺), 십척위장(十尺爲丈)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를 세종대의 것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주척을 황종척에 준하면 6촌 6리, 영조척을 황종척에 준하면 8촌9분9리, 조례기척을 황종척에 준하면 8촌2분3리, 포백척을 황종척에 준하면 1척3촌4분 8리라고 되어 있다. 경국대전의 기록과 세종대의 척도를 비교해 보면 황종척, 조례기척, 영조척, 주척 등은 일치하고 있으나 오례의포백척과는 약 6분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전제상정소 준수책(遵守冊)의 포백척과는 2리의 차이로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성종대의 포백척의 길이는 46.80cm이다.

(5) 임진왜란 이후~순조

임진왜란 후 세종 때 만들어진 표준척들은 병란을 겪는 사이에 전부 없어지고 단지 삼척부(三陟

<표. 2> 경국대전 기록과의 대조표<sup>19)</sup>

관계척	기준척	황종척기준(34.72cm)				차이	
		세종 척	도량형치 cm	경국대전 척	도량형치 cm	척	cm
주척		0.5993	20.81	0.6050	21.04	-0.0067	-0.23
영조척		0.8997	31.24	0.8990	31.21	+0.0007	+0.03
조례기척		0.8250	28.64	0.8230	28.57	+0.0020	+0.07
포백척(오례)		1.2890	44.75	1.3480	46.80	-0.0590	-2.05
포백척(전제상정소)		1.3460	46.73			-0.0020	-0.07

府)에 세종 포백척 하나만이 남았다. 따라서 임진왜란 후 영조 때에는 각양각색의 척도들이 사용되었기에 영조는 영조 16년에 척도교정을 하였다. 그 내용은 삼척부에 남아있던 포백척을 경국대전의 도량형기에 근거하여 세종조의 제척도로 만들어, 그것을 표준으로 척도를 통일하였다. 이 때 재현된 각 척도간의 길이차는 다음 <표. 3>과 같다.

이에 의하면 이 길이들은 경국대전에 기록된 길이관계가 아니라 증보문헌비고에 기록된 길이관계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것으로 그 주척 길이는 경국대전에 기록된 주척 길이와는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유물을 보면 세종조의 도량형개혁을 경국대전에서 전기(轉記)하여 범전으로 삼았으나, 성종때 완성시킨 기록에서는 주척장(周尺長)과 조례기척장(造禮器尺長)에 수정을 하였던 탓으로 포백척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22년(1798)의 이병모(李秉模)의 수계(繡啓)에 대한 하교내용을 보면 도지소에는 표준이 될 표준유척이 보존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정조 때 내린 중화척의 길이가 영조대의 포백척 길이와 일치하고 있는 걸로 보아 정조 이후에도 삼척부의 포백척 길이로 교정, 실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순조대에 와서는 이정주척(釐正周尺)이란 교정 기록을 통하여 경국대전 기록을 정정하였으므로 경국대전의 도량형기에서의 척도간의 길이는 세종12년에 고정통일된 각척도 사이의 길이 관계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고 순조대의 포백척은 49.254cm로 나타난다.

<표. 3> 영조 재현척도 대조표<sup>20)</sup>

		황종척(cm)	주척(척)	영조척(척)	조례기척(척)	포백척(척)	종서척(척)	황서척(척)
영조16년	10촌척							
	9촌척		1.5	1.001	1.1		1.15	1.189
증보문헌비고	10촌척		1.6686	1.11148	1.21239		1.281	1.315
	9촌척		1.5017	1.0003	1.09091		1.1529	1.1834
경국대전	10촌척		1.65016	1.11234	1.215066	0.742		
	9촌척		1.48515	1.00111	1.09356	0.6678		
영조	10촌	34.654	20.792	31.219	28.353	46.703	27.12	26.230
	9촌	31.188						

<표. 4> 순조20년의 도지소 표준도량형표<sup>21)</sup>

명칭	항목	1척길이	
		단위(황종척)	단위 (cm)
황종척		1.0000	34.616
주척		0.5979	20.700
영조척		0.8908	30.838
조례기척		0.7936	27.474
포백척		1.4228	49.254

여기에 비하여 증보문헌비고의 척도관계는 세종12년에 고정된 모든 척도간의 길이들을 그 당시에 비교실측해 둔 기록으로 볼 수 있다.

(6) 순조이후 ~ 대한제국

조선말기에는 주척, 영조척, 침척, 포백척이 혼용되었고 같은 종류의 자라도 길이가 다른 것들이 혼용되었다. 이에 당시 대한제국이었던 광무(光武) 6년(1902)에 평무원(平武院)을 설치하고 도량형법을 개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외형상으로는 미터법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본이 실시하고 있었던 표준적인 곡척(曲尺)을 기본적으로 개정 실시하였다. 포백척에 관해서는 종래 관용하던 포백척을 병용하되 기장을 1척6촌으로 하고 분=포백척의 1/100, 촌=포백척의 1/10, 포백척=1척6촌, 장=10포백척으로 명칭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포백척의 길이를 곡척으로 계산하면 48.48cm가 된다. 단국대 박물관에는 일제시대때 상업용 포백척으로 사용되었던 경척(鯨尺)이 있는데 1촌의 눈금 간격이 3.8cm로서 일본의 경척과 일치한다. 융희(隆熙) 3년(1909) 9월에는 도량형법을 제정하여 광무 6년의 도량형법을 폐지시키고, 명칭, 명위(命位) 및 종류를

일본과 동일하게 하였는데, 광무 6년 정부에서 판매한 도량형기는 포백척만을 금지시켰다.

그 후 1926년에는 조선도량형령이 공포되어 미터법 즉 1cm=곡척 3푼3리, 1m=곡척 3척3촌으로 50cm, 1m의 자를 현재까지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인체 혹은 자연물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하였던 척도의 기준, 단위, 명칭 등이 서양식으로 바뀌어지는 국제화의 커다란 전화기를 이루게 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물 중에는 포백척 몇 종의 호조척도(戶曹尺度)가 전열되어 있는데 그 중 포백척의 길이는 48.91cm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포백척 ○ 지둔죽전피물금사화피승색(布帛尺 ○ 紙菴竹氈皮物金絲樺皮繩索)"이라 기명되어 있고 5촌의 길이 24.62cm에 촌과 분의 눈금이 새겨져 있어 이로써 1척의 길이가 49.24cm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광무 6년의 포백척 1척은 곡척의 1척6촌 즉 48.48cm가 된다는 기록과 차이를 보인다.

당시에 미터법을 도입하는 등의 도량형을 통일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량형제도는 여전히 문란하였는데 그 이유는 포백척과 길이가 거의 같은 침척(針尺)이 통용되고 있었던 점 때문인데 침척은 재봉척이며 손가락 굵기를 표준으로 눈금을 매긴 것으로 포백척(48.8cm)보다 5분이 길고 곡척으로는 약 1척6촌6분이므로 (50.3cm)가 되고 40척이 1필이었다. 조선시대 문헌과 유물에 나타난

포백척의 길이는 다음 <표. 5>와 같다.

위에서 보면 조선시대의 포백척은 세종대 부터말기까지 44.75cm에서부터 50cm내외가 가장 많았고 대한제국에 들어서는 60.60cm까지 통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하여 보면 상고시대부터 전해오던 우리나라 고유의 결부속파법(結負束把法)은 조선 세종대까지 전해져 사용되었으며 신라 문무왕대에는 결부속파법을 당대척, 주척, 기전척으로 고치는 도량형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유물로 보아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듭하여 고려에서부터 조선초까지 고유의 도량형제를 중국의 것으로 고치려는 시도가 있었다. 세종대에 와서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게 도량형제도를 정비하고 오례의에 기록으로 남겼으나 성종대 완성된 경국대전에 주척을 오기(吳記)하였던 관계로 법전이었던 경국대전에 근거한 도량형제도는 따라서 세종대와 차이점을 보여 도량형제도가 혼란하였으며 임진왜란후 거의 모든 도량형기가 소실되어서 그 이후로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포백척의 가장 확실한 기준은 세종대의 것이며 대한제국에 와서는 그때까지 전해오던 결부속파법과 제척(諸尺)들이 일본의 곡척으로 모두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1926년 조선도량형령(朝鮮度量衡令)이 공포됨에 따라 미터법으로 50cm, 1m의 자를 현재까지 사용하게 되었다.

<표. 5> 조선시대 문헌 및 유물에 나타난 포백척<sup>29)</sup>

번호	시대별 척도	포백척길이(cm)
1	세종 12년(1430), 오례척도	44.75
2	세종13년(1431), 전제상정소 척도	46.73
3	경국대전(성종 16년, 1485)	46.80
4	사례편람(四禮便覽 1844)	44.80
5	영조 26년(1750) 개척도	46.80
6	순조20년(1820) 釐正周尺時尺度	46.80
7	光武6年(1902) 改尺度	48.48
8	도량형연의(1902)	48.80
9	도지부보관 도기원기(度支府 保管 度器原器)	48.70
10	昌德宮 陳列室 朝鮮末 戶曹尺度	48.91
11	昌德宮 陳列室 銅四角柱尺度	49.24
12	朝鮮末通用諸尺	51.51 60.60



### Ⅲ. 척도의 종류

#### 1. 주척(周尺)

주척이란 중국 주대(周代)의 척으로 옛부터 중요한 기구에는 특히 토지의 장량(丈量)과 이정(里程) 등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되었다. 양전척(量田尺) 또는 이정척으로도 사용되었다. 세종 12년에 고정된 주척을 오래 포백척에 준하면 4촌6분5리 이고, 전체 상정소 준수척의 포백척에 준하면 4촌4분5리, 황종척에 준하면 5촌9분9리에 해당하여 그 길이는 20.795cm이었다고 고증되고 있다. 그러나 경국대전의 기록에는 주척이 황종척의 6촌6리 즉 21.04cm로 약간 길어졌으며, 숙종때의 길이는 20.94cm이었고, 정조대에는 19.63cm였다. 또한 수표교 수위계에 사용된 주척은 순조 20년에 21.79cm 단위로 만들어 졌다. 현재 국립박물관소장품의 주척의 길이는 21.6cm이고 창덕궁 소장품의 주척길이는 20.6cm이다.

#### 2. 황종척(黃鍾尺)

황종이란 고대 음률의 기본악기를 말하며 황종관의 길이를 척도의 기준으로 한 것이 황종척이다. 황종누서지법(黃鍾累黍之法)에 의하여 90분을 황종지장(黃鍾之長) 즉 황종률관장(黃鍾律管長)으로 하고 100분 즉 10촌을 황종척 1척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조선시대 세종 12년 허조와 박연이 중심이 되어 척도고정을 실시하였을 때의 황종척 길이는 34.7cm이다. 이 길이는 조선시대 척도의 기본이 되었다.

#### 3. 영조척(營造尺)

영조척은 악기의 제조와 건축, 조선, 조차(造車), 목공, 각공(刻工), 석공 등 주로 관가에서 쓰던 자로 통칭 목척(木尺), 공척(工尺), 영조척, 노반척(魯班尺) 등으로 불린다. 목수가 쓰는 것도 이 영조척으로 방의 넓이를 나타내는 칸수도 이 자를 기본으로 한 것이다. (영조척으로는 8척 사방을 1간(間)으로 한다.) 이것은 지방에 따라 2-3분 쯤 차이가

나서 청주목척이니 진주목척이니 지명을 붙여 그 장단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세종 12년의 길이는 31.220cm이고 정조 20년(1796)의 영조척은 31.0cm이고 창덕궁에 소장되어 있는 유척의 황종척 1척 길이는 31.17cm 이며 광무(光武) 6년(1902) 부터는 1m의 10/33인 30.3cm의 단위 길이를 가진 곡척을 영조척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 4. 조례기척(造禮器尺)

조례기척은 문묘 및 종묘 제례의 제도 기준적으로 각종 예기(禮器)를 제작할 때 사용하던 자를 예기척 또는 조례기척이라 한다. 다른 단위와 같이 10진법으로 되어 있으나 척이상의 단위는 사용되지 않는다.

세종실록 오래 폐백란(幣帛欄)에 보면 폐백제도에 사용하는 자는 조례기척인데 길이는 이번에 고정된 포백척의 6촌4분에 해당한다는 기록과 함께 첫머리에 신제(新制) 조례기척의 실촌도도 함께 그려 놓았다. 실측해 본 결과 이는 28.621cm였다. 그 후 경국대전의 조례기척도는 28.558cm이며, 순조 때 실측된 수표교수위 주척에 의해 계산된 길이는 28.64cm이다. 창덕궁 소장의 유척 제4면에는 예기척이라는 기명과 5촌 실장 13.73cm의 실눈금이 음각되어 있어 1척의 길이가 27.46cm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조례기척은 조선시대 말기 이후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 Ⅳ. 현재 한복에 사용되는 포백척

#### 1. 현재 사용되는 포백척에 대한 실태조사

현재 한복점에서 사용하는 포백척을 연구하기에 앞서 서울 소재 52점, 경기도 소재 50점, 강원도 소재 51점, 제주도 소재 10점, 부산 소재 50점, 전라도 소재 51점, 충청도 소재 51점 총 314점의 한복점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복식 제작시 사용하는 1자에 대한 포백척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로 위 <표. 6>을 보면 현재 전국 한복점에서 한국 전통복식 제작시 사용하는 1자

에 대한 포백척은 30cm-60cm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지역적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각 지역별 포백척 사용 현황

지역	대상 상점 수	사용 포백척
서울	52점	50cm
경기도	36점	50cm
	8점	30cm
	3점	45cm
	3점	60cm/55cm/ 50cm
강원도	51점	50cm
제주도	1점	60cm
	9점	50cm
부산	11점	50cm
	39점	54.5cm
전라도	51점	60cm
충청도	30점	50cm
	6점	50cm / 54.5cm
	14점	55cm

위의 실태조사 결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첫째로 1926년 조선도량형령(朝鮮度量衡令)이 공포되어 미터법을 사용하게 된 후에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포백척에 있어서 그 크기가 통일되지 않았고 둘째로 한국 전통복식 제작자에 따라 사용하는 포백척의 크기가 다르고 이는 제작시 정확한 치수공식에 의해 산출된 치수로 제작하는 방식보다 제작자의 경험에 의한 치수를 산출하여 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 전통복식의 제작에 있어서 각 부위별 치수 산출방식이 공식화되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 2. 실물제작 비교분석

위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 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백척의 길이가 지역적에 따라 그리고 제작자에 따라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표준자를 기준으로 할 때 각 지역의 대표적인 포백척으로 제작한 실물의 치수와 미터법에 의해 공식지정된 자 즉 50cm 1자로 제작한 실물의 치수를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이는 먼저 각 지역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각각 다른 포백척으로 제작을 할 때 실물의 실제치수 비교 및 치수 산출 방법을 비교하고 동시에 비교에서 나온 오차를 표준자의 사용을 통하여 줄일 수 있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제작할 실물은 부위별 치수 비교가 용이한 여자 저고리로 정하였고 비교할 부위는 저고리 길이, 깃 길이, 뒷폭, 화장, 고대, 진동으로 정하였으며 위의 실태조사에서 비교적 다수 한복점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50cm 포백척, 부산지역의 54.5cm 포백척, 전라도지역의 60cm 포백척을 사용하여 품 90cm, 화장 72cm, 키 162cm인 40대 여성의 저고리를 기준으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소재의 질감과 두께, 밀도가 미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제작자의 차별화를 위하여 색상만 달리하여 제작하였다.

우선 표준화된 여자 저고리의 치수측정 방법 및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여자 저고리 제작시 필요한 기본 치수는 윗가슴둘레·저고리 길이·화장이며 나머지는 이 치수들을 근거로 산출해 낼 수 있다. 위 부분의 치수 측정 방법<sup>23)</sup>은

- 윗가슴둘레 : 윗가슴둘레는 겨등량이 바로 밑의 가슴을 수평으로 돌려 잴다.
- 저고리 길이 : 등길이를 참고로 저고리 길이를 조절한다. 등길이는 뒷목점에서부터 허리 둘레선까지 수직으로 약간 여유있게 내려 잴다.
- 화장 : 화장은 뒤에서 팔을 옆으로 45° 각도로 들고 뒷목점에서부터 어깨끝점을 지나 손목점까지 자연스럽게 잴다. 소매 길이의 기준이 되는 치수이다.

위의 치수를 기준으로 제도한 여자 저고리의 각 부위별 치수 산출법은 다음과 같다.

치수 산출은 저고리 길이와 화장은 위 측정 방법에 의해 산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윗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한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다. 공식을 살펴보면<sup>24)</sup> 품 :  $(B/4+1.5-2) \times 2$  / 고대 :  $(B/10-0.5) \times 2$  / 깃길이 :  $결깃+고대+안깃$ 이다.

먼저 50cm 1자를 기준으로 할 때 54.5cm, 60cm의 1자(50cm), 2자( 100cm), 4자(200cm)의 길이에

서 오는 오차를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위 <표. 7>을 보면 50cm 1자를 표준자로 하였을 때 부산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54.5cm의 자는 표준자 1자와는 -0.95cm의 오차가 있고 표준자 2자와는 -1.9cm의 오차가, 표준자 4자와는 -3.8cm의 오차가 있다. 그리고 전라도지역에서 사용하는 60cm의 자는 표준자 1자일 때 -0.2cm, 2자일 때 -1cm, 4자일 때 -2cm의 오차가 있다. 즉 50cm 1자가 표준자일 때 54.5cm, 60cm 기준자는 이미 50cm 기준자의 길이와 차이가 있으므로 표준자와 오차가 적은 자를 사용할 경우 제작한 사람의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그 오차는 줄어 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물제작을 하였다.

제작자들은 저고리 부분별 치수 산출을 앞에서 기술한 표준화된 공식보다 자, 치, 푼을 단위로 하

는 치수로 제작하였다.

서울지역의 50cm 1자를 표준자로 여자 저고리를 제작시 쓰이는 각 부분별 포백척을 사용한 치수와 50cm 표준자의 풀이치수 및 제작한 실물의 실제 치수는 <표. 8>과 같다.

<표. 8>을 보면 서울지역의 50cm 포백척을 기준으로 여자 저고리를 제작할 때 기준으로 측정부위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제작자의 치수 산출 방식에 따라 치수를 낸 결과 제도상의 부분별 치수와 실물의 부분별 치수는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있다.

부산지역의 54.5cm 포백척을 기준으로 여자 저고리를 제작할 때 쓰이는 각 부분별 포백척을 사용한 치수와 50cm 표준자의 풀이치수 및 제작한 실물의 실제 치수는 <표. 9>와 같다.

부산지역의 54.5cm 포백척을 사용할 때 제도상

<표. 7> 50cm 1자 기준에서 54.5cm, 60cm 자의 1자, 2자, 4자의 길이 및 오차

길이 \ 자 종류	50cm		54.5cm		60cm	
	길이	오차	길이	오차	길이	오차
50cm (1자)	1자 50cm	·	9치 49.05cm	-0.95cm	8치3푼 49.8cm	-0.2cm
100cm (2자)	2자 100cm	·	1자8치 98.1cm	-1.9cm	1자6치5푼 99cm	-1cm
200cm (4자)	4자 200cm	·	3자6치 196.2cm	-3.8cm	3자3치 198cm	-2cm

<표. 8> 50cm 포백척

부분 \ 치수	포백척을 사용한 치수	50cm자의 풀이치수(cm)	실제치수(cm)
저고리 길이	5치 2푼	26	26.2
깃길이	4치 4푼	22	22
진동	4치 3푼	21.5	21.5
뒷품	9치 5푼	47.5	47.8
화장	1자 2치	75	75
고대	3치 2푼	16	16

<표. 9> 54.5cm 포백척

부분 \ 치수	포백척을 사용한 치수	50cm자의 풀이치수(cm)	실제치수(cm)
저고리 길이	5치 2푼	28.34	27
깃길이	4치	21.8	20.5
진동	3치 9푼	21.26	22
뒷품	9치	49.05	49.5
화장	1자 3치 7푼	74.65	75.5
고대	3치	16.35	16

의 산출한 치수와 실물의 치수를 비교해 본 결과 저고리 길이에서 1.34cm, 화장에서 약 1cm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전라도지역의 60cm 포백척을 기준으로 여자 저고리를 제작할 때 쓰이는 각 부분별 포백척을 사용한 치수와 50cm 표준자의 풀이치수 및 제작한 실물의 실제 치수는 <표. 10>과 같다.

<표. 10>을 보면 전라도 지역의 60cm 포백척으로 제작자의 치수 산출 방식에 따라 각 부위의 치수를 산출한 결과 제도상의 부분별 치수와 실물의 부분별 치수는 깃길이에서 0.7cm의 차이를 보이고 나머지는 0.5cm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0> 60cm 포백척

부분 \ 치수	포백척을 사용한 치수	50cm자의 풀이치수(cm)	실제치수(cm)
저고리 길이	4치 5푼	27	27
깃길이	3치 7푼	22.2	21.5
진동	3치 5푼	21.3	21.7
덧폼	8치 5푼	51	51.4
화장	1자 2치 5푼	75	75.5
고대	2치 8푼	16.8	17

위의 각각 다른 지역의 3종류의 포백척을 사용하여 치수를 비교한 결과 제작자의 방식으로 산출해 낸 치수와 실제 치수간의 차이가 0.5cm~1.34cm 정도까지 나는 경우가 있어 이는 현재 자에 의한 정확한 제작보다 손어림으로 제작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덧폼의 경우 3종류의 포백척을 사용할 때의 치수는 각각 47.5cm, 49.05cm, 51cm로 3.5cm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앞에서 기술한 바와같이 50cm 표준자와 오차가 작은 자를 썼을 때 실제치수에서도 오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전통복식에 있어서 사용되는 포백척의 단위 통일과 치수 산정에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 도입되어야 하며 제작에 사용되는 포백척이 50cm 표준자로 통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V. 결 론

척(尺)은 인류가 생존하였을 때부터 물질의 크기

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며 척의 기준의 근원은 인체의 각 부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사회조직의 분화에 따라 각 분야의 전용자, 즉 황종척(黃鐘尺), 주척(周尺), 영조척(營造尺), 조례기척(造禮器尺), 포백척(布帛尺)등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중 포백척은 의복을 재단하거나 각종 포백을 측량할 때 사용하는 자이며 이 척들은 기준척들로서 주척과 조선시대에는 황종척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시대에 따라 기준척들에 대한 척의 비율을 산출해 내어 사용하였다.

현재 한복에 사용되는 포백척의 역사 및 사용실태를 연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전통복식에 사용되는 포백척의 역사를 연구한 결과 상고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척인 결부속파법(結負束把法)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선 세종대까지 전해져 사용되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척 제도가 중국의 제도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나 중국의 척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삼국시대의 고구려척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것은 일본의 척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신라 문무왕대에는 결부속파법을 당대척, 주척, 기전척으로 고치는 도량형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유물로 보아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듭하여 고려에서부터 조선초까지 고유의 도량형제를 중국의 것으로 고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조선 세종대에 와서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게 척제를 정비하고 오례의에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 그러나 성종대 완성된 경국대전에 주척을 오기(吳記)하였던 관계로 법전이었던 경국대전에 근거한 도량형제도는 따라서 세종

대와 차이점을 보여 도량형제도가 혼란해졌다. 그러하던 것이 임진왜란후 거의 모든 도량형기가 소실되었고 삼척부(三陟府)에 세종 포백척 하나만이 남게되어 임진왜란 이후 척제가 정확한 표준 없이 사용되었고 순조20년(1820)에 와서 이정주척이란 교정기록을 통하여 경국대전 기록을 정정하였으니 조선시대 포백척의 가장 확실한 기준은 세종대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제국에 와서는 전래되던 결부속과법과 제척(諸尺)들이 일본의 곡척으로 모두 바뀌게 되고 1926년에 조선도량형령(朝鮮度量衡令)이 공포됨에 따라 미터법으로 50cm, 1m의 자를 포백척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게 되었다.

둘째, 전국 314개 한복점을 대상으로 현재 한국 전통복식 제작시 사용하고 있는 자의 길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1926년 이후 미터법이 제정된 후에도 옷감을 재는 단위의 하나인 1자에 대한 포백척은 30cm, 45cm, 50cm, 54.5cm, 55cm, 60cm 등 여러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서울, 경기, 강원도의 경우 미터법 제정 이후 표준 포백척으로 승인되었던 50cm의 자를 포백척으로 다수 사용하고 있으며 부산은 조사대상점포 50점 중 약 80%가 54.5cm를, 전라도지역은 조사대상점포 51점 모두가 60cm를 1자의 길이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실태조사로 미루어 볼 때 아직까지 한국 전통복식을 제작하는 제작자들은 표준화되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의해 한복을 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 부산, 전라도를 대상으로 품 90cm, 화장 72cm, 키 162cm인 40대 여성의 저고리를 각각 제작하여 비교분석한 것과 일치하였다. 특히 이들은 나름대로의 치수 산출방법을 사용했으며 실제 제작된 저고리와 제작자의 방식으로 산출해 낸 치수간에 차이가 0.5cm~1.34cm 정도까지 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현재 자에 의한 정확한 제작보다 경험에 의한 손어림으로 제작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50cm 표준자에 가까운 자를 쓸수록 표준자를 사용하여 제작한 실제치수의 오차도 줄일 수 있었다.

이상으로 한복에 사용되는 포백척에 관한 역사와 현재 사용 실태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으나 문헌과 유물을 통한 이상의 연구로 우리나라 포백척의 변천과정과 각 시대에 따른 정확한 포백척을 밝혀내

기에는 미흡하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고유의 도량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하지 못하였고 유물과 기록마저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실제 길이를 밝힐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정확한 포백척 길이의 규명과 함께 현재 한국 전통복식 제작에 사용되는 포백척의 단위 통일과 치수 산정 및 제작 방식에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박홍수, 「한중도량형제도사(韓中度量衡制度史)」, p.3, 1999
- 2) 오락(吳洛), 「중국도량형사(中國度量衡史)」, pp.130~131, 대만상무인서관(臺灣商務印書館), 1937.
- 3) 박홍수 한중도량형제도사, p.3
- 4) 윤장섭, 한국의 영조척도, p. 3, 대한건축학회지 19권 63호
- 5) 漢書 志 卷4 食貨志
- 6) 魏書 卷110, 食貨志
- 7) 박홍수, 「한국고대 양전법과 양전척에 관한 연구」, 한불연구, p.76
- 8) 「영의해(令義解)」 권10, 잡령(雜令) 제 30 : 凡度十分爲寸...十寸爲尺 一尺二寸大尺 一尺 十尺爲丈...凡度地量銀銅穀者...皆用大 此外官私悉用小者
- 9) 「당육전(唐六典)」 권3, 금부랑중원의랑(金部郎中員外郎) : 凡度以北方秬黍中者 一黍之廣爲分 十分爲寸 十寸爲尺 一尺二寸爲大尺 大尺爲丈
- 10) 「영집해(令集解)」 권12, 전부(田部) : 又雜令云 度地以五尺爲步 又和銅六年二月十九日格 其度地以六尺爲步者未知令格之赴 并段積步改易之義 請員分釋 无使疑惑也 答 幡云令以五尺爲步者 是高麗法用爲度地令便 而尺作 長大 以二百五十步爲段者 亦是高麗術云之 即以高麗五尺 准金尺六尺相當 故格云以六尺爲步者 則是 令五尺內積步 改名六尺 積步耳 其於地无所損益也 然則時人念 令云五尺格云六尺 即依 格文可加一尺者...
- 11) 민덕식(閔德植), "고구려의 태천(泰川) 웅오리산성(籠吾里山城)과 마애석각(磨崖石刻)", 「백산학보(白山學報)」, 43, pp.43~45, 1994
- 12) 望月長興, 「日本人の尺度」, pp.165-168, 東京 文藝書房, 1944
- 13) 關野貞, 「朝鮮の建築と藝術」, p.345, 東京 岩波書店, 1941
- 14) 박홍수, 한중도량형제도사, p.530
- 15)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21년7월1일
- 16) 세종실록 권49, 세종12년 9월 정묘

- 17) 이은경, 「한국과 중국의 포백척에 관한 연구」, p.72,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0
- 18) 經國大典, 戶典 雜稅
- 19) 이은경, 「한국과 중국의 포백척에 관한 연구」, p.74,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0
- 20) 박홍수, 「한중도량형제도사」, p.626,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9
- 21) 박홍수, 「한중도량형제도사」, p.63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9
- 22) 이은경, 「한국과 중국의 포백척에 관한 연구」, p.82,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0
- 23) 이주원, 「한복구성학」, p.24, 경춘사, 1994.
- 24) 이주원, 「한복구성학」, pp.92~93, 경춘사, 1994.